

2015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
- 나. 의안번호 : 제 1180 호
- 다. 제출일자 : 2016. 5. 10.
- 라. 회부일자 : 2016. 5. 13.

2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,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·세출, 기금, 채권, 채무 등에 관한 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.

3. 결산안 개요

가. 일반회계

1) 세입결산

세 입 결 산 현 황

(단위: 천원)

구분	예산액	징수결정액 (A)	수납액 (B)	미수납액 (A)-(B)	미수납액 처리		수납율(% (B/A))
					결손처분	다음연도 이월액	
2015	565,670	682,838	665,098	17,740	-	17,740	97.4
2014	542,989	505,314	505,314	-	-	-	100
2013	478,150	684,046	683,630	416	-	416	99.9

- 세입은 당초 예산액이 5억 6,567만원으로 6억 8,284만원을 징수결정하고 6억 6,51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7.4%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은 1,774만원 발생하였음.

2) 세출결산

세 출 결 산 현 황

(단위: 천원)

구분	예산액	전년도 이월액	예비비	변경	전용	이용	예산현액	지출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 (불용율)
2015	2,523,070	-	-	-	18,200 -18,200	-	2,523,070	2,051,424	224,240	247,406 (9.8%)
2014	1,685,697	-	-	910 -910	100,440 -100,440	-	1,685,697	1,521,759	-	163,938 (9.7%)
2013	1,632,982	-	-	3,330 -3,330	51,349 -51,349	-	1,632,982	1,388,919	-	244,063 (14.9%)

- 예산현액은 25억 2,307만원이며, 이 중 20억 5,14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.8%인 2억 4,741만원이 발생함.

3) 예산의 이용 · 전용 · 이체 · 변경사용

- 예산의 이용은 없음.
- 예산의 전용은 총 1건에 1,820만원으로 품질시험소의 품질시험 소청사 담장 보수를 위해 동일 단위사업 내 목그룹간 조정에 따른 것임.
- 예산의 이체는 없음.
- 예산의 변경은 없음.

4) 예비비 지출

- 예비비 지출은 없음.

5) 전년도 이월사업비

-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음.

6) 다음연도 이월사업비

-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계속비이월은 없고, 명시이월 규모는 총 2억 150만원으로 예산현액 25억 2,307만원 대비 8.0%이며, 사고이월 규모는 총 2,27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.9%임.

7) 집행잔액

- 집행잔액은 2억 4,741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9.8%에 해당하는 규모임.

집행잔액 현황

(단위: 천원)

구 분	예 산 현 액	집 행 잔 액	불 용 율 (%)	비 고
2015	2,523,070	247,406	9.8%	
2014	1,685,697	163,938	9.7%	
2013	1,632,982	244,063	14.9%	

< 발생원인별 내역 >

- (기술심사담당관) 집행사유 미발생 : 없음
- (기술심사담당관) 예산절감 : 없음
- (기술심사담당관) 집행잔액 : 6천만원
 - 건설 기술심의회 운영 27백만원
 -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제공 7백만원
 -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 20백만원
 - 기술용역 성과품 디지털화 및 공개 2백만원
 - 그 밖의 사항들 4백만원
- (품질시험소) 예산절감 : 없음
- (품질시험소) 집행잔액 : 1억 88백만원
 - 건설자재 품질시험 26백만원

-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23백만원
- 품질시험소 청사유지관리 53백만원
- 도로포장 품질향상 72백만원
- 그 밖의 사항들 14백만원

4. 검토 의견

가. 일반회계

1) 세입결산

세입결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예산액 (A)	징수결정액 (B)	수납액 (C)	미수납액 (B)-(C)	미수납액 처리		수납율(%)	
					결손처분	다음연도 이월액	C/A	C/B
2015년	565,670	682,838	665,098	17,740	-	17,740	117.6	97.4
2014년	542,989	505,314	505,314	-	-	-	93.0	100
2013년	478,150	684,046	683,630	416	-	416	142.9	99.9

가) 개요

- 세입결산은 당초 예산액 5억 6,567만원에 6억 8,284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수납액은 6억 6,51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.4%이며, 미수납액은 1,774만원 발생하였음.

나) 세수추계 (결산서 p.14~15)

- 최근 3년간 세수추계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(B/A)이 2013년 143.1%, 2014년 93.0%인데 비해 금회는 120.7%로, 전회 대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결과가 다소 크게 벌어짐.

[표 1]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크게 발생한 주요 항목

(단위: 천원)

편성목	예산액 (a)	징수결정액 (b)	수납액	(b)-(a)	사유
기술심사담당관					
과태료	14,000	41,990	27,621	27,990	국토교통부에서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위반 건설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
품질시험소					
증지수입	461,500	604,917	604,917	143,417	‘아스콘 포장유지보수공사’ 지방서 개정에 따른 아스콘 시험횟수 증가

-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가 크게 나타난 주요 항목들을 살펴보면([표 1] 참조) 먼저, 기술심사담당관 세입 항목 중 ‘과태료’의 경우 예산액 1,4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4,199만원(300%)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는 국토교통부로부터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(2015.1.28.)이 있어 당초 예상과 달리 금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임.
- 다음으로, 품질시험소 세입 항목 중 ‘증지수입’에 대한 예산액 4억 6,15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6억 492만원으로 1억 4,341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‘서울시 아스팔트콘크리트 유지보수공사 지방서’ 개정(2015.3.30., [표 2] 참조)에 따라 아스콘 시험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임.

[표 2] '서울시 아스팔트콘크리트 유지보수공사 시방서' [혼합물 관리 시험]
주요 개정내용

당 초	변 경
노선별 1회 이상 시험	1일 1회 이상 시험

※ 시방서 개정에 따라 아스콘 포장시 교통 통제시간 제약 등으로 인해 1개 노선당 2~5일 소요

다) 미수납액 (결산서 p.14~15)

- 일반회계 미수납 총액은 1,774만원이며,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.

[표 3] 다음연도 이월액 세부내역

다음연도 이월액	1,774만원	비 고
- 과태료	1,437만원	기술심사담당관
- 기타사용료	283만원	품질시험소
- 과태료	54만원	품질시험소

- [표 3]의 과태료 미수납(2건) 이월액 1,437만원은 「건설기술진흥법¹⁾」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해당하는데, 2016.1.29.일 38세금징수과로 이관한 결과, 이 중 1건(760만원)은 2016년 4월 완납되었고, 다른 1건은 해당 건설사(동부건설)가 법정관리 중에 있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3년간(2015년~2017년) 분할 납부에

1) 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 ④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(이하 "종합보고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발주청(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·허가기관의 장을 말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정으로 모두 수납될 것으로 예상됨.

- 다음으로, 품질시험소 미수납액 282만원은 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에서 임대·사용하고 있는 청사별관의 2015년 4분기 임대료에 해당하며 2016년 1월 완납되긴 하였으나, 이처럼 납부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

라) 과오납반환액(결산서 p.14~15)

[표 4] 과오납반환액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분	부 서	세입과목	예산액	징수결정액	과오납 반환액	당 초 징수액	사 유
2015년	2건		461,500	611,468	3,180	3,180	
	품질시험 소 총무과	주차요금 수입	-	6,551	3,093	3,093	착오부과로 인해 공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반환
		수수료 수입	461,500	604,917	87	87	착오부과로 인해 공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반환
2014년	2건		489,471	463,829	818	818	
	품질시험 소 총무과	증지수입	489,471	463,330	68	68	증지수수료를 기납부 하였으나 착오로 세무과에 중복 부과하여 환급
					290	290	증지수수료를 세무과에 부과 요청하는 과정에서 금액표기 오기로 착오 부과하여 환급
		그외 수입	-	499	460	460	우리은행 전산오류로 인해 공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반환

- 금회 과오납반환액 발생은 품질시험소에서 총 2건에 318만원이 발생하였고, 2건 모두 업무착오에 따른 것으로 과오납 금

액이 소액이긴 하지만 동일한 부서에서 전회에 이어 금회 또 다시 발생하였는바, 행정부주의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하겠음.

2) 세 출 결 산

■ 기술심사담당관

세 출 결 산 현 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예산액	전년도 이월액	예비비	변경	전용	이용	예산현액	지출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 (불용율)
2015	698,112	-	-	-	-	-	698,112	638,450	-	59,662 (8.5%)
2014	675,786	-	-	-	-	-	675,786	551,907	-	123,879 (18.3%)
2013	719,171	-	-	-	-	-	719,171	560,890	-	158,281 (22.0%)

가) 개 요

- 예산현액은 6억 9,811만원으로 이 중 91.5%인 6억 3,845만원을 지출하고 8.5%인 5,966만원이 불용되었음.

나) 집행잔액(결산서 p.22~24, p.50~51)

- 기술심사담당관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6억 9,811만원 대비 8.5%인 5,966만원이 불용되었으며, 최근 3년간 불용율 추이 (22.0%→18.3%→8.5%)를 볼 때 다소 개선되고 있어 고무적이긴 하나 보다 과학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 노력을 통해 개선효과가 지속되도록 해야 할 것임.

- ‘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’의 경우 예산현액 3억 7,657만원 중 3억 4,993만원을 지출하고 6.9%인 2,664만원을 불용하였으며, 불용사유로는 예산편성 당시 대형공사에 대한 기본설계기술제안심의 1건을 예상하여 심의비용을 편성하였으나 당해연도 기술제안심의 건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,

- 동 사업은 차년도 심의건수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, 발주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비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.

[표 5] 연도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실적

(단위 : 건)

구분	계	기본설계적격	기 타
2013년	130	1	129
2014년	164	0	164
2015년	208	0	208

○ ‘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’ 사업은 예산현액 1억원 중 8,043만원을 지출하고 20%인 1,957만원을 불용하였는데, 이는 지난해 불용율(10%)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임.

- 동 사업은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·반복 공종에 대해 공무원들이 자체설계로 전환하여 공무원들의 설계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,

[표 6] 2015년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지원사업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번	부서명	배정액	집행액	사업 시행효과	해당 사업명
8건		85,984	80,430	347,630	
1	교량안전과	12,800	9,687	155,150	- 영동대교 외 1개소 보수공사 등 5건
2	한강사업본부 (생태공원과)	7,200	7,102	54,700	- 여의도(봄)한강숲 조성 외 1건
3	체육시설관리사업소 (시설개선과)	19,284	18,593	45,470	- 잠실주경기장 석면해제 및 환경 개선 공사 외 2건
4	체육시설관리사업소 (목동사업과)	18,520	18,200	20,260	- 목동주경기장 1, 2층 노후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외 1건
5	서부공원녹지사업소 (시설과)	6,400	5,888	16,520	- 신북초등학교 옥상녹화 및 텃밭 조성공사 외 1건
6	서부공원녹지사업소 (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)	3,180	3,020	5,600	- 여의도공원 시설물 및 수목정비공사
7	서울역사박물관 (시설과)	4,400	4,180	16,510	- 박물관내 외벽 석재, 후레싱, 창호코킹, 기계실 방수 및 기타공사
8	서울시립대학교 (시설과)	14,200	13,760	33,420	- 전농관 1층 커뮤니티공간 리모델링공사 등 14건

※ 사업시행 효과 : 외주 용역시행시 용역금액

- [표 6]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해연도 동 사업의 지원 효과가 교량안전과의 ‘영동대교 외 1개소 보수공사’ 등 5건에 자체설계비로 969만원을 지원하여 1억 5,515만원의 사업효과를 내는 등 8개 사업에 8,043만원을 지원하여 총 3억 4,763만원의 설계비 절감효과를 얻어내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.
- 다만, 지난해에 비해 불용율이 다소 증가한 바, 예산편성 이전에 각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지원제도 홍보를 보다 면밀히 시행하여 불용율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자체설계 대상과 범위를 넓혀가는 방안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.

다) 예산이용 · 전용 · 이체 · 변경 사용

- 예산의 이용 · 이체 · 변경사용은 없음.

라) 예비비 지출

- 예비비 지출은 없음.

마) 명시이월

- 명시이월 없음.

바) 사고이월

- 사고이월 없음.

■ 품질시험소

세 출 결 산 현 황

(단위: 천원)

구분	예산액	전년도 이월액	예비비	변경	전용	이용	예산현액	지출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 (불응율)
2015	1,824,958	-	-	-	18,200 -18,200	-	1,824,958	1,412,974	224,240	187,744 (10.3%)
2014	1,009,911	-	-	910 -910	100,440 -100,440	-	1,009,911	969,852	-	40,059 (4%)
2013	913,811	-	-	3,330 -3,330	51,349 -51,349	-	913,811	828,029	-	85,782 (9.4%)

가) 개 요

- 예산현액은 18억 2,496만원이며 이 중 77.4%인 14억 1,297만원을 지출하고 12.3% 2억 2,424만원을 이월하였으며, 10.3%인 1억 8,774만원이 불용되었음.

나) 집행잔액 (결산서 p.25~27, p.51~53)

- 품질시험소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.3%인 1억 8,774만원으로 전년(4%)에 비해 불응율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, 불응률의 증가는 예산편성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추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.
- ‘건설자재 품질시험’ 인건비 예산의 경우 예산현액 1,299만원

중 99%인 1,286만원을 불용하였는데, 기간제 근로자보수는 택시미터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검정민원이 몰려오거나, 시의 교통 정책상 일시적인 신규 택시미터 검정업무²⁾ 증가에 대비하여 책정된 예산으로,

- 2015년도에는 일시적인 택시미터 검정민원 폭증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불용이 발생했다고는 하나, 향후 예산 편성시 택시미터 검정 수요를 사전 조사한 후 예산계획을 수립 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.

○ ‘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’ 인건비 예산의 경우 예산현액 1억 3,242만원 중 63.6%인 8,426만원을 지출하고 36.4%인 4,816만원을 불용하였음.

- 이는 청사 유지관리(청소 및 경비분야, 5명)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편성하였으나, 2015년 청소분야 근로자(2명)가 공무원직(촉탁직)으로 전환(행정1부시장 방침 제340호, 2014.11.5.)됨에 따라 별도의 공무원 인건비(재무과 통합편성 재배정 예산) 사용으로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,

- 공무원 전환시점에서 동 인건비 예산을 재무과로 이체하는 등의 예산의 효율적 사용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임.

2) (예시) 운행기록계 장착, 연말의 대폐차 급증, 구급차·고급택시·콜버스 신설 등

다) 예산의 전용(결산서 p.31)

[표 7] 2015년도 예산전용 내역

(단위: 천원)

예산과목					변경 내역	
정책	단위사업	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감	증
1건					18,200	18,200
건설공사 품질수준향상	건설공사 품질관리사업	시험장비및 행정장비구입	자산취득비	자산및물품 취득비	18,200	
	건설공사 품질관리사업	품질시험소 청사유지관리	시설비및부대비	시설비		18,200

- 금회 예산의 전용사용은 1건에 1,820만원이며, 예산의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,
 - 금회 전용사유는 품질시험소와 대한결핵협회 경계담장이 전도 위험에 노출되어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담장을 보수함에 따라 부족한 보수 공사비용을 자산취득비(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) 예산에서 전용한 것임.
 - 경계담장의 전도 위험은 평상시 청사 점검시에 지적되어 신규 사업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으며, 평상시 청사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다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.

라) 예산의 변경

- 예산의 변경은 없음.

마) 예비비 지출

- 예비비 지출은 없음.

바) 명시이월(결산서 p.56)

- 명시이월은 ‘도로포장 품질향상’ 1건으로, 예산현액 7억 1,209만원 대비 28.3%인 2억 1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, 이는 차열성 도로 시공기술 개발 및 투수성 포장의 단면 설계 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, 용역 발주를 위한 사전절차 지연 및 1회 유찰 등에 따른 것임.
- 이는 당초 예산편성 시점에서 사전절차 및 연구범위와 이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기간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, 이를 간과하여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을 낳았는바, 시정되어야 할 것임.

사) 사고이월(결산서 p.58)

- 사고이월은 ‘건설자재 품질시험’ 1건으로, 예산현액 2억 7,209만원 대비 8.4%인 2,27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, 이는 세부사업의 하나인 ‘품질시험소 50년사 백서’를 발간하기 위한 비용임.

- 사고이월의 사유가 적격업체 선정 지연에 따른 것으로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업체 선정과정에서 적정업체 수배가 용이하지 않았던 것이 주된 사유로 파악되나,
- 수의계약보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³⁾을 채택했다면 업체 선정도 용이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효과도 얻었을 것으로 판단됨.

3)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(협상에 의한 계약체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·용역 계약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·기술성·창의성·긴급성,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안서(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(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)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<개정 2011.9.15., 2012.5.23., 2013.3.23., 2014.11.19.>